

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33840 판결 [사전구상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3384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46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진원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변준석

피고, 항소인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장두식

변론 종결2024. 3. 6.

판결 선고2024. 4. 3.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468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863,509원 및 이에 대해 2022. 8. 18.부터 2022. 9. 16.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23. 6. 13.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일 뿐 그 실제 당사자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J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선매입금의 반환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을 운영하는 J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8. 4. 20. 위 호텔 스파 및 찜질방 입장권(이하 '스파이용권'이라 한다)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판매권을 J이 피고 회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판업무 제휴계약이 체결되고(갑가 제3호증), 2018. 4. 25.에는 위 호텔 객실 및 객실패키지 상품(이하 '객실이용권'이라 한다) 관련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한 단독 판매권을 J이 피고 회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2018. 5. 1. 피고 회사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총판권에 관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나 제1심판결이 지적하고 있듯이 2018. 10.경까지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을 제10, 11, 18호증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일 뿐이라거나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선매입금의 반환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가 'G'의 객실 이용에 관한 총판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 제1항 다.호1)를 근거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했으나, 거래 관행상 총판권과 단독 판매권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피고 회사는 원래부터 'G'의 객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총판권이 아니라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한 단독 판매권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 'G'의 객실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판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한 단독 판매권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총판권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J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8. 4. 25. 작성된 부속합의서(갑가 제3호증) 제1조 제1, 2호2)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G'의 객실이용권에 관해 부여받은 권한은 소셜커머스 3사(L, M, N)에 관한 단독 판매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총판계약서 제2조 제1호 및 제5호3)에 따르면,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의하는 '총판'은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부여받은 'G'의 스파이용권 및 객실이용권을 원고 보조참가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즉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총판권은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부여받은 'G'의 스파이용권 및 객실이용권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판매권으로서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부여받은 객실이용권이 총판권인지 아니면 독점 판매권인지는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 제1항 다.호의 총판권은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부여받은 'G'의 객실 이용에 관한 독점 판매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총판계약서 제1조가 '피고 회사가 총판 대행 운영하는 스파이용권과 객실이용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제4조 제2항 가.호가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위 스파이용권 및 객실이용권에 대한 총판 대행 운영권 유지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총판계약은 위 객실이용권도 총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G'의 객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 만큼 피고 회사가

그 총판권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2018. 4. 20."을 "2018. 5. 1."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0, 11행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들은 '객실 이용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뿐 총판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 제1항 다.호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G'의 객실이용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위 호텔에 대한 경영권 분쟁 등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없어 객실이용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된4) 만큼 객실 이용에 관한 총판권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이 사건 총판계약에 대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보조참가인은 '객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객실이용권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했는바, 설령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 제1항 다.호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 나아가 위와 같은 객실 이용의 장애는 2018년 11월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2월에도 이어졌고, 2019년 1월경에는 'G'의 운영 주체도 J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고 호텔 명칭도 'O'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 보조참가인 내지 피고 회사의 총판권이 그대로 유지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3, 14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7행의 "2023. 6. 9.자"를 "2023. 6. 12.자"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판사성언주

1) 피고 회사를 "갑", 원고 보조참가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본 항 가.호의 경우에는 상호 서면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갑"이 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총판권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 을 "갑", 피고 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제1조(객실판매)

1. "을"은 "갑"이 보유한 객실에 대하여 객실 및 객실패키지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소셜커머스(L, M, N)의 단독 판매권을 보장한다.

3) 피고 회사를 "갑", 원고 보조참가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상품"이라 함은 "갑"이 본 계약을 통하여 "을"에게 판매하도록 제공하는 "G"의 스파이용권 및 객실이용권을 의미한다.

2. "총판"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갑"의 "상품"을 "을"이 독점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4)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해 예약을 했던 고객이 호텔 측으로부터 객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갑가 제11호증).

5)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 제1항 라.호도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